

1. 개정이유

정밀도로지도 간행 및 수정간행 절차 간소화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(법률 제18936호, 2022년 12월 11일 시행)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 방법 및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, 그 밖에 과도한 민원치리기간의 단축 및 개인정보 기재가 필요 없는 서식 정비 등 업무추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 신청 방법, 심사사항, 심사 수수료 등(제17조, 제18조, 별표 12, 별지 제9호)
- 나. 측량업 등록민원 처리기간 단축(10일→7일) 및 신청인·신청사항 등 일부 개선(별지 제37호)
- 다. 법령 본문의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 서식 보완(별지 제13호, 제41호)
- 라. 개인정보(등록번호) 기재가 불필요한 서식 개선(별지 제56호, 81호, 84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없 음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중 “법”을 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“이라 한다.

제17조제2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는 간행한 지도의 수정사항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도로지도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.

별표 12제3호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해당 업무	단위	수수료	해당 법조문
바. 정밀도로지도	km당	0.01퍼센트	

별지 제9호서식중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※ 지도등의 심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1: 1,000, 1: 1,200 :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7퍼센트
- 1: 5,000, 1: 10,000 :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8퍼센트
- 1: 25,000 :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9퍼센트
- 1: 50,000, 1: 100,000 :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11퍼센트
- 1: 250,000, 1: 500,000, 1: 1,000,000 :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10퍼센트
- 정밀도로지도 : km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0.01퍼센트

별지 제13호서식중 수수료를 “없음”에서 “시행규칙 별표13에서 정한 바에 따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7호서식중 처리기간을 7일로 하고 신청인 및 신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7일				
신청인	성명		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:					
	휴대번호 <input type="checkbox"/> SMS 수신 동의		전자우편 FAX번호					
	주소							
등록사항	상 호 :		대표자 :		지적측량	일반측량	공공측량	
	소재지 :				등록번호 (등록일자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분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점	측지측량	연안측량	지하측량	영상도화	영상처리	수치지도	지도제작	항공측량

별지 제41호서식중 처리기간을 20일로 하고 신청인 및 신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20일				
신청인	성명		법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					
	전화번호 SMS수신번호		전자우편 주소 FAX번호					
	주소							
등록사항	상 호 :		대표자 :		지적측량	일반측량	공공측량	
	소재지 :				등록번호 (등록일자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본점	측지측량	연안측량	지하측량	영상도화	영상처리	수치지도	지도제작	항공측량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점								

별지 제56호서식중 “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별지 제81호서식중 “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별지 제84호서식중 “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심사한다.

1. ~ 3. (생략)
- ② (생략)

--.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도로지도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- ② (현행과 같음)